

운영규정 개요

기본 정보

기관명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번호	054-917-8622	팩스번호	054-917-8612
설치일자	2025년 3월	정원	해당없음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계약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해지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5.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종사자가 급여 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로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	----------------

